##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0287 제안연월일: 2025. 4.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6733	서천호의원	2024 12. 19.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 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4.16.) 상정
	2206767	서천호의원	2024. 12. 20.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 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4.16.) 상정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

25. 4. 1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4. 18.)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 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 법률 제 호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8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부의 책무) ① • ② (생	제3조(정부의 책무)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
	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
	<u>·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u>
	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u>다.</u>
<u>&lt;신 설&gt;</u>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
	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
	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
	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
	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 <u>할</u> 수 있다.